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83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송재봉 · 서영교 · 한준호
박정현 · 김문수 · 강준현
이연희 · 이주희 · 김기표
박 정 · 민병덕 · 이수진
이광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을 “다음”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하여야 하며, 구매대상자는 정해진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u>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u>정할 수 있다.</u> 1. ~ 5. (생략) ② ~ ⑥ (생략) <u><신설></u>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 -----<u>다음</u>----- ----- ----- ----- ----- ----- ----- -----<u>정</u> <u>하여야 하며, 구매대상자는 정해진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u>